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소방청장 이홍교

2022. 3.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2022.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화재현장 보존, 관계인의 출석,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조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내용 및 절차(안 제2조-제4조)

화재원인 조사, 화재피해 조사, 대응활동에 관한 조사,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조사,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 구성·운영(안 제5조-제8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관리(안 제11조)

화재증거물 수집 및 기록,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송 사항 규정

마.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안 제12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및 방법 규정

바. 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안 제13조)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해야하는 서류 및 첨부 사
항, 화재증명원 발급 방법

바. 화재감정기관 운영 방법 및 절차(안 제14조-18조)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서 발급, 화재감정기관의 변경신고,
감정기관의 감정, 감정결과에 대한 통보사항, 감정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증거물 등의 반환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법」,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생략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중

라. 기 타 : 생략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의 내용)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원인조사

가. 발화원인

나. 화재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다. 연소상황

라. 피난상황

2. 화재피해 조사

가. 화재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

나. 재산피해

3. 대응활동에 관한 조사

가. 소방대의 대응활동

나. 관계 기관의 대응활동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조사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

나. 비상구(非常口) 등 설치·유지 및 관리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

가. 화재위험성

나. 화재위험 유발요인

다. 화재확산 요인

6.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에 관한 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결과

나. 조치명령 이행 상황

7.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상황

나.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현황 및 업무 수행

8.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화재조사의 내용,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조(화재조사 절차)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출동 중 조사 :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 화재현장에서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피해상황 등 조사
3. 정밀조사 : 감식·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4. 화재조사 결과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화재조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조(화재조사 결과 보고) ①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 관련 서식에 따라 소방관서장에게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재조사 결과 서류, 관련 자료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5조(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화재조사관 두 명 이상이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배치·운영하여 화재조사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담부서에는 별표 1에 따른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조정

2. 화재조사의 발전과 화재조사관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3.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④ 전담부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소방관서별 화재조사관의 편성 기준 등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조(화재조사관 자격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재조사 관련 자격증”이란 화재감식평가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 분야 중 건축,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말한다.

제7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 ①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등에 관해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

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화재조사 이론 및 실무 관련 시험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⑥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 과목·방법, 응시절차 등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교육훈련)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이론과 실습

2. 화재조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요·특이화재 조사,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영 제8조제1항

제1호다목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화재조사 관련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화재현장 통제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제구역을 알리는 별표 2의 표지는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10조(화재조사관 증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증표와 같다.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관리) ①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려는 경우 증거물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 등을 통해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녹화 파일은 저장매체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2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에 관한 사항
3.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 현황
4. 그 밖에 화재위험성이 있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관한 사항

③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에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증명원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4조(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서 발급)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감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감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소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을 관보 또는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5조(화재감정기관의 변경신고) ① 감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전문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2. 감정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감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에 따른 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기관 등록대장에 그 변경이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6조(감정기관의 감정 등) ① 소방관서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감정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다.

② 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감정의뢰서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 또는 보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다른 감정 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감정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감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 처리 요청을 받은 감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감정 결과의 통보) ① 감정기관의 장은 감정이 완료되면 제10호 서식의 감정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감정을 의뢰한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 결과를 통보할 때 의뢰받은 증거물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증거물이 훼손 등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과 협의하여 감정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정 결과 및 감정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의 보존기간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감정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증거물 등의 반환) 감정기관은 감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감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물을

감정을 의뢰한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구 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발굴용구 (8종)	공구세트, 전동드릴, 전동그라인더, 전동드라이브, 이동용진공청소기, 휴대용열풍기, 에어컴프레서, 전동절단기
기록용기기 (13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TV, 적외선거리측정기, 디지털온도·습도측정시스템,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웨어러블캠, 3D스캐너, 3D카메라(AR), 3D캐드시스템, 드론
감식기기(16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산업용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디지털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 내시경현미경
감정용 기기(21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試片)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변화가 심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하는 장치),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유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폭발압력측정기세트, 전압조정기(직류, 교류), 적외선 분광광도계, 전기단락흔실험장치[1차 용융흔(鎔融痕), 2차 용융흔(鎔融痕), 3차 용융흔(鎔融痕) 측정 가능]
조명기기 (5종)	이동용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랜턴, 헤드랜턴, 전원공급장치(500A 이상)
안전장비 (8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무전송수신기 내장),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화재조사조끼
증거수집 장비 (6종)	증거물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보관세트(상자, 봉투, 밀폐용기, 증거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세트(번호, 화살·○표, 스티커, 삼각형 표지), 증거물 태그 세트(대, 중, 소), 증거물보관장치, 디지털증거물저장장치
화재조사차량 (2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화재조사 첨단 분석차량(비파괴 검사기, 산업용실체현미경 등 탑재)

보조장비 (6종)	노트북컴퓨터, 전선 릴, 이동용 에어 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피복(활동복, 방한복), 화재조사용 가방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의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30㎡ 이상의 실(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가공물 고정을 위한 기구),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커, 피펫, 유리병 등), 건조기,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보존기)

비고

1. 화재조사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활용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화재조사 전용 피복은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피복과 구별이 가능하고 화재조사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화재조사용 가방은 일상적인 외부 충격에 가방 내부의 장비 및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되고 휴대가 간편한 가방을 말한다.
4. 화재조사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화재현장 통제구역 표지

화재현장 통제구역

1. 통제구역 범위 :
2. 통제 기간 :
- 3.
- 4.

○ ○ 소방서장

화재조사관 증표

[앞면]

화재조사관 자격증

사진
(가로3.5cm ×
세로4.5cm)

김소방

소방청

[뒷면]

제 호 혈액형 형

성명	김소방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1. 이 자격증은 화재조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합니다.

2.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청장

직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TEL 044)205-7476 Fax 044)205-8747

[54mm×85mm, 상하좌우 여백 각 1mm]

화재증명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화재 발생일시			
화재 발생장소 (주소)			
대상명			
발급목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화재사실에 대한 화재증명원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소방청장) 귀하

신청인 제시 자료	1.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대리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제 호

화재증명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발급목적	
화재발생 개요	일시	
	장소 및 명칭	
	원인	
화재피해 대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명칭	
	구조 및 규모	
피해내역	동산	
	부동산	
	인명피해	
사용목적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소방청장)

직인

화재증명원 발급대장

[illegible]

■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 또는 명칭 (법인 또는 기관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대표자 및 임원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재감정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전문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2.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화재조사 관련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감정기관 정관(혹은 규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전문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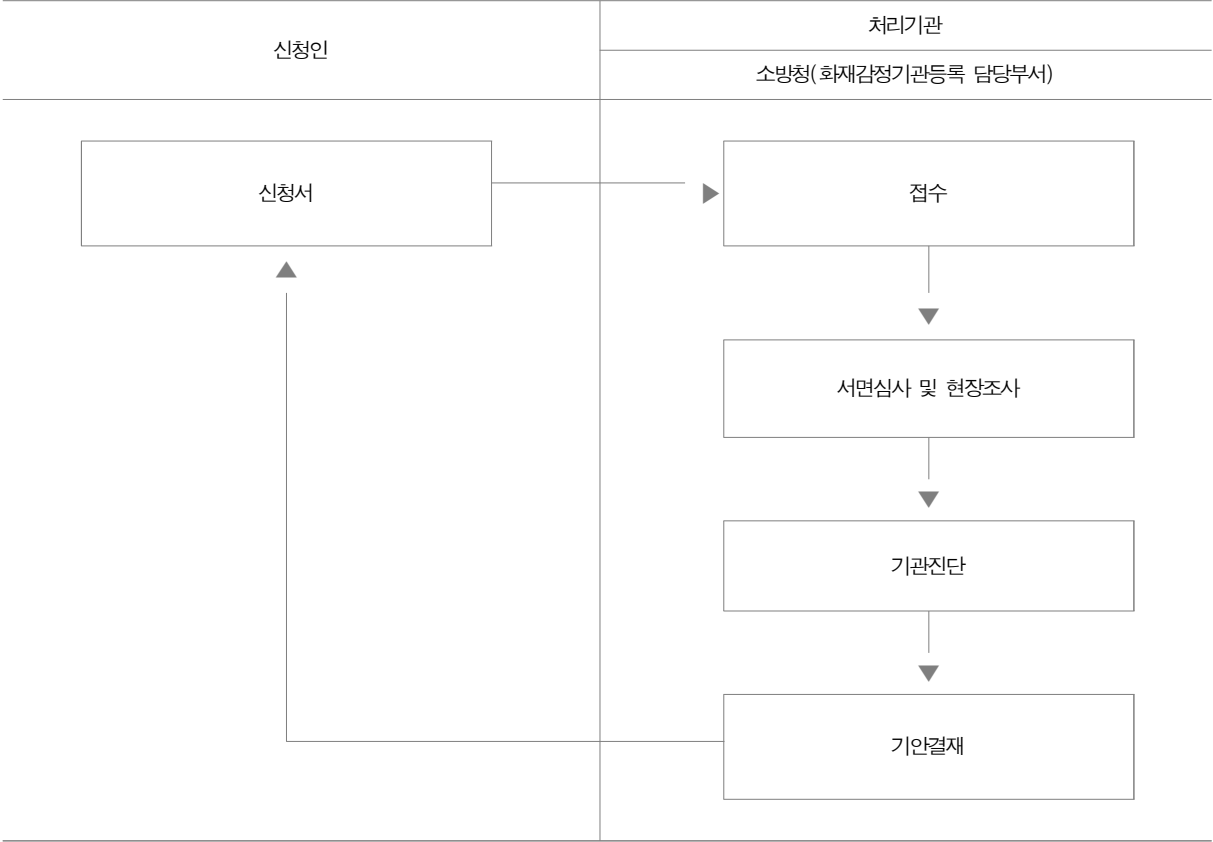
*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상 호(명 칭)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화재감정기관 등록대장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연 월 일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화재감정 전문인력 보유현황					
주 된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보 조 기 술 인 력	
기술자격증 또는 학위번호	성 명	기술자격증 번호	성 명	기술자격증 번호	성 명

화재감정기관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신고사항

[] 명칭 또는 상호 변경 [] 소재지 변경 [] 전문인력변경 [] 대표자 변경

변경일자

변경 내용	구 분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전문인력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변경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명칭·상호 또는 소재지 를 변경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2. 변경된 전문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학위증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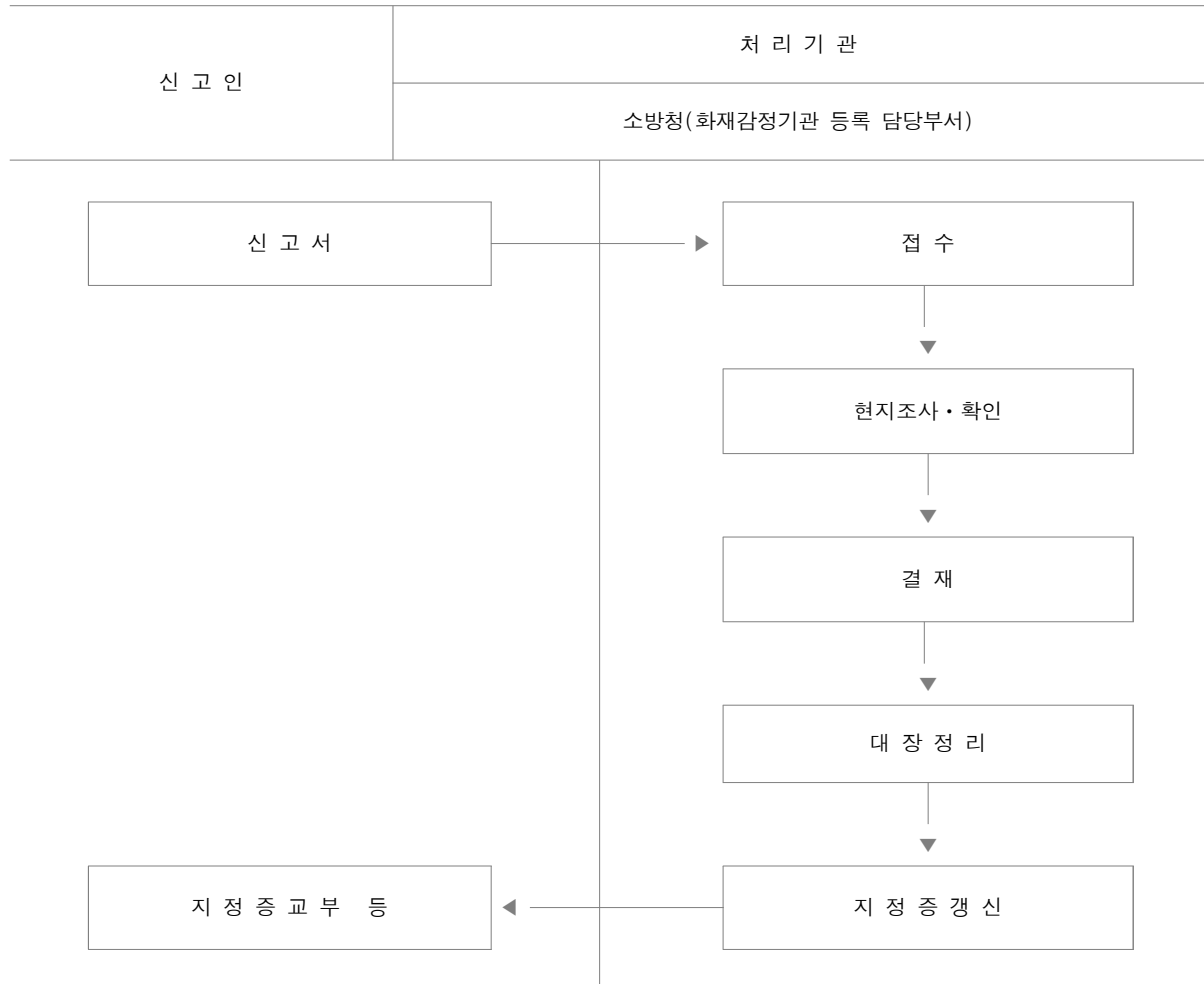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감정의뢰서

신청인	소방관서명				
	성명(소방서장 또는 소방청장)				
	주소 (전화번호)				
건명 (화재번호)					
화재 상황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소				
	발생 개요				
감정대상					
수거장소					
감정사유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화재에 대한 감정을 의뢰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의뢰인 소방서장(소방청장)

직인

감정기관

귀하

신청인 제출품	감정대상물 등
---------	---------

감정결과 통지서

신청인	소방관서명				
	성명(소방서장 또는 소방청장)				
	주소 (전화번호)				
건명 (화재번호)					
화재 상황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소				
	발생 개요				
감정개요					
감정사항					
감정결과 (발화열원, 발화요 인, 최초착화물 등)					
입증사항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화재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감정기관

직인

소방서장(소방청장) 귀하

〈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 205 - 7475

●소방청공고제2022-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5.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개정이유를 작성해주세요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내용 및 절차(안 제2조-제4조)

화재원인 조사, 화재피해 조사, 대응활동에 관한 조사,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조사,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 구성? 운영(안 제5조-제8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 관리(안 제11조)

화재증거물 수집 및 기록,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송 사항 규정

마.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안 제12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및 방법 규정

바. 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안 제13조)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해야하는 서류 및 첨부 사항, 화재증명원 발급 방법

바. 화재감정기관 운영 방법 및 절차(안 제14조-18조)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서 발급, 화재감정기관의 변경신고, 감정기관의 감정, 감정결과에 대한 통보사항, 감정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증거물 등의 반화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ecoli2245@korea.kr
- 팩스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75,
팩스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